

<행정부>

(1) 대통령

-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, 임기 5년 - 2임 x
- 행정부 수반 + 국가원수
- 권한

<행정부 수반>

- 법률안 거부권
- 공약권 임명권
- 대통령령 발령권
- 행정부 사처·감독권

<국가원수>

① 국가기관 구성권

- 헌법재판소장
- 헌법재판소 재판관
- 대법원장
- 대법관
- ⋮

임명권

② 국장소장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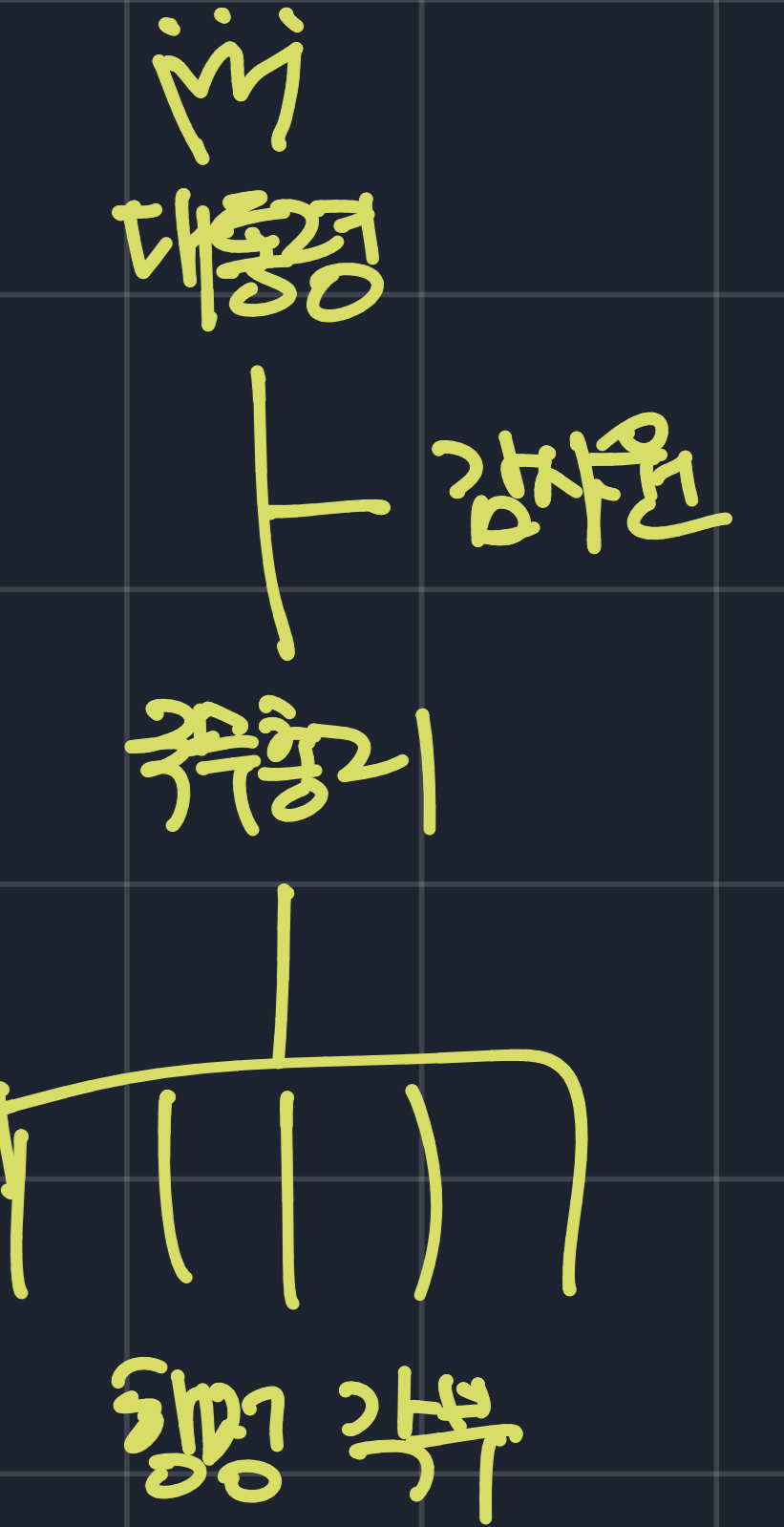
- 국회의장회 소집요구권
- 헌법 개정안 제안권
- 사면권
- 국인특포 부여권

③ 대외적 국가대표권

- 조약 체결·비준권
- 선언포고 및 강화권
- 외교사절 신임·접수 및 파견권

④ 국가와 헌법 수호권

- 위헌정당 해산 제안권
- 차기집권
- ↳ 긴급계령·경비처명명령권
- ↳ 긴급명령권·계엄권



< 행정부 > 대통령 직속 기관 (총리, 심의)

(2) 국무총리 - 행정부 고위

- 총리 총리 업무 대통령 임명

- 권한

1) 국무총리 임명 제청 - 해임 건의권

2) 행정 각부 통할

3) 총리령 발포

(3) 행정 각부

- 장관은 국무총리 중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
- 대통령 결성 정책 및 정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집행

(4) 국무회의 -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

- 구성: 대통령(의장), 국무총리(부장), 국무위원

- 정책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 심의

↳ 국무회의 의결에 대통령 거부 X

↳ 헌법에 규정된 경우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

헌법 개정안
국인투표안
법률안 · 조약안
사면권
국가감관권
정당 해산 제소

(5) 감사원

- 구성 { 감사원장 (총리 총리 업무 대통령 임명)

감사위원 (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)

- 대통령 직속, 감사 업무에 관하여 "독립적" 사무

- 권한

1) 국가 세입 · 지출의 결산 검사

2)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계의 회계 검사

3)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감찰

* 행정부 내부 통제 수단

- 대통령의 책임상 행위는 구체화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함

- 국무총리 임명 제청 · 해임 건의권

- 국무회의 심의

- 감사원 직무 감찰

- 행정심판

- 국민 권익위

⋮

<회의> - 의사결정 기관

(1) 구성

- 회의원 (회의 직집 선거로 선출, 임기 4년 - 중임이) ^{다른 상당부분 간} _→ [→] 구성 가능
- 의장 1인, 부의장 2인, 위원회 (상임/특별), 고급단체 (20인 이상)

(2) 회의와 의사결정

- ① 회의 유형: 정회 (현 회), 임시회 (재적의원 1/4 소아 대통령 외)
- ② 회의 원칙: 회의 공개의 원칙, 회기 계속의 원칙, 일사부재의 원칙
- ③ 일반적인 의결 절차: 의안 제출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의결
- ④ 일반적인 의결 기준: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

(3) 권한

① 입법

- 법률 제·개정권
- 헌법 개정안 제안권
- 대통령의 주요 조약 체결·비준에 대한 "동의·승인권"

③ 재정

- 예산안 심의·의결권
- 예산안 결산 심사권 _{→ (다) 감사원 - 결산검사}

② 행정 감시 및 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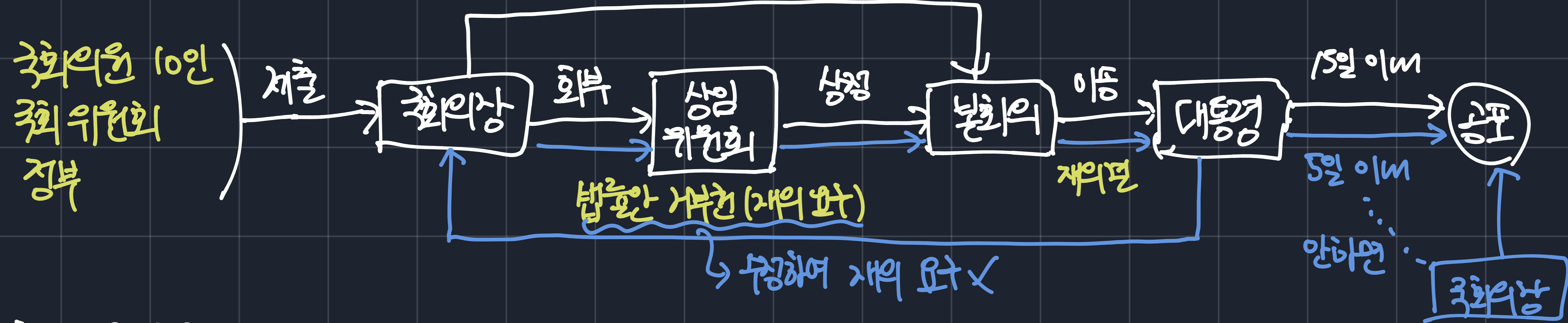
- 대통령 권한에 대한 동의·승인권
- 탄핵 도청권 _{→ 국무총리도 가짐}
- 국무총리·국무위원 해임건의권
- "회칙 위 및 결약권"

④ 국가관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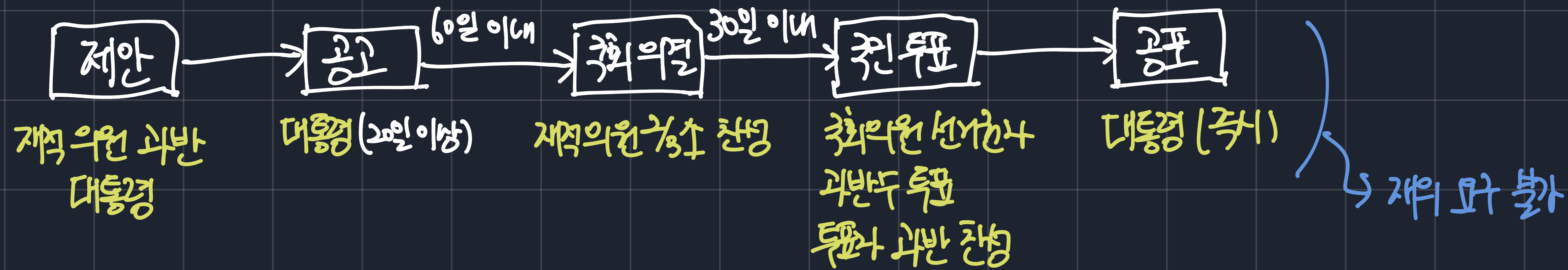
-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_{→ (다) 대통령 - 국무총리}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

<국회> - 의사결정 기관

① 법률안 제·개정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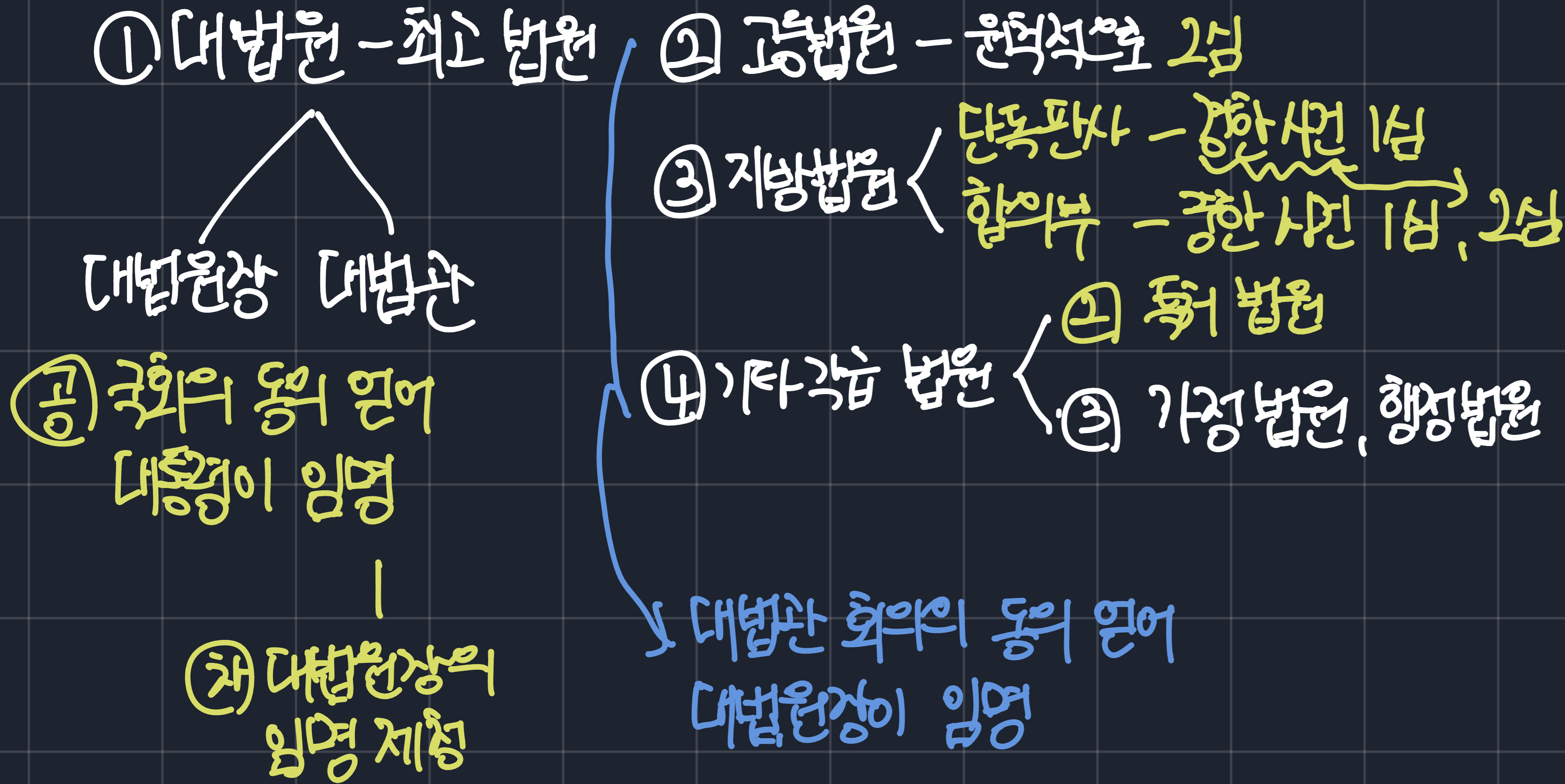


② 헌법 개정 절차



<사법부> - 재판 → 국가 법률이 준수 + 국민의 기본 보장

(1) 법원의 조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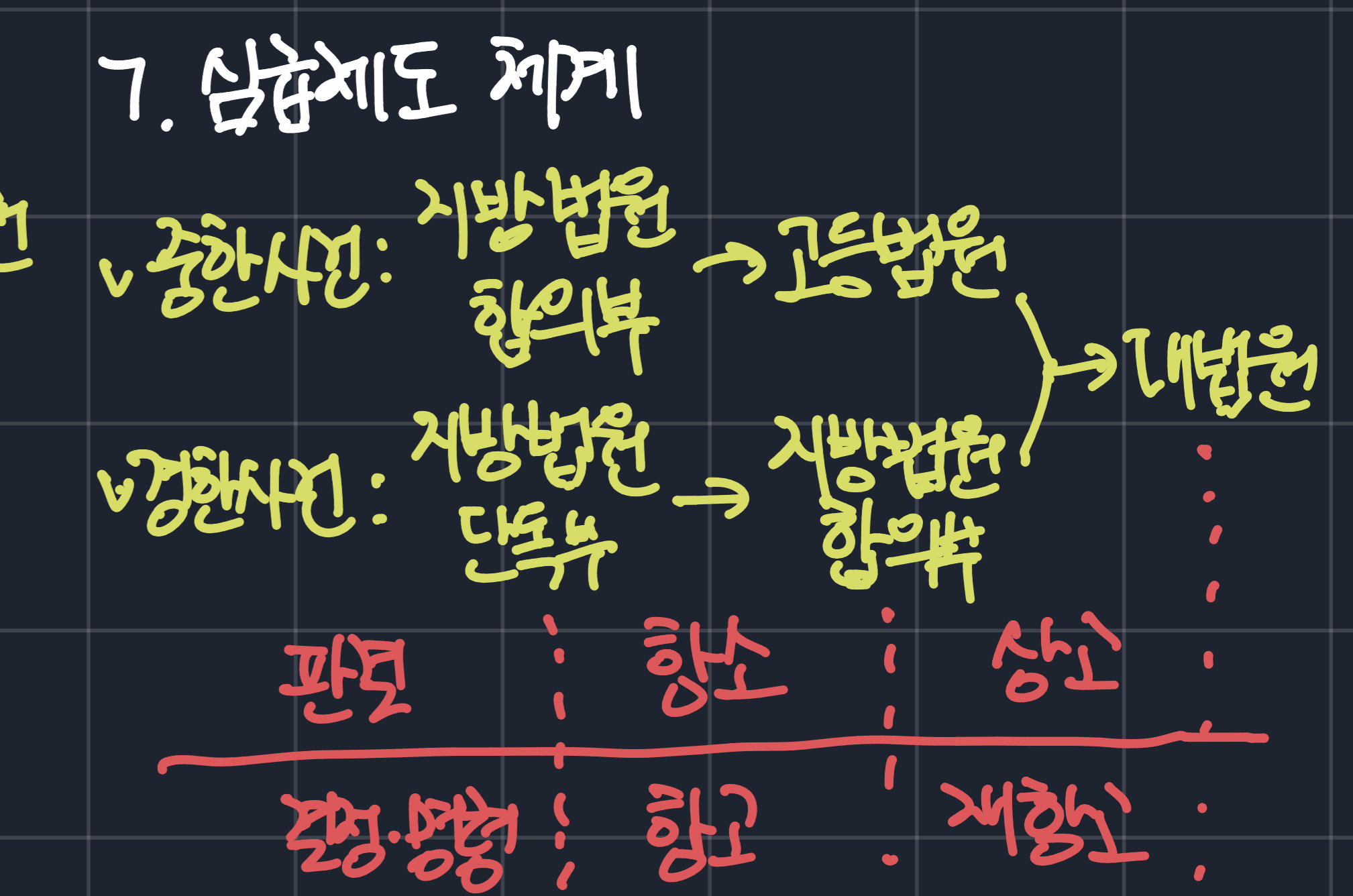
(2) 법원의 권한

- 재판권
- 위헌·위법한 명령·규칙·처분 심사권
- 위헌 법률 심사 제정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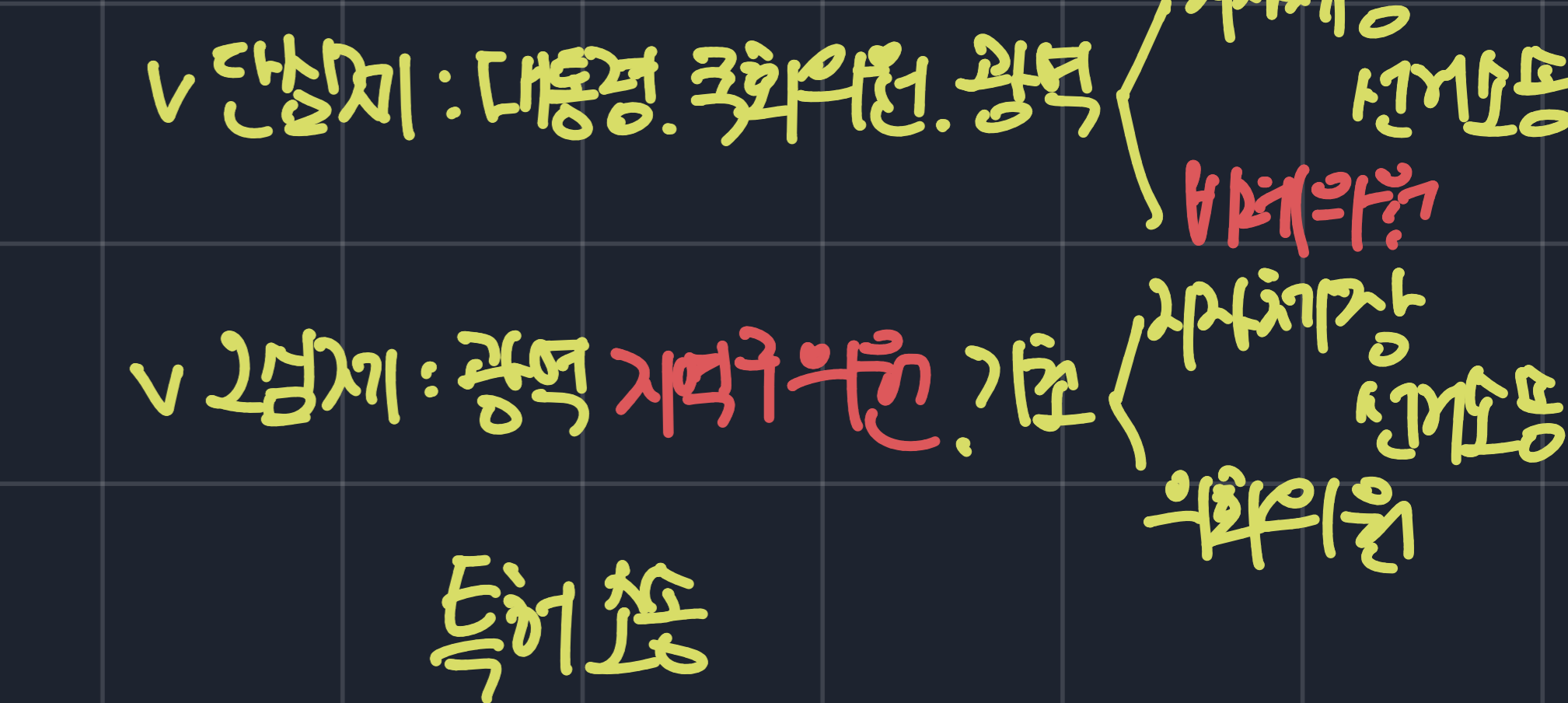
(3)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

- ① 사법권의 독립 < 법관, 법원 >
- ② 삼심제도
- ③ 공개 재판의 원칙 < 상임과 판별 헌법적 강제 >

* 삼심제도



8. 3심제의 예외



<헌법재판소> - 국민의 기본권 보장, 헌법 수호

1) 구성

- 헌법재판관 9인

↳ 국회에서 선출한 3인
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(포함) 대통령이 임명 3인 모두 임명

- 헌법재판소장 (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)

- 임기 6년, 연임 가능

- 정치적 독립 의무 (정당 가입 X)

2) 심판권한 유형

| 유형 | 제청권자 | 정족수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) 권한쟁의심판 | 국기관, 자치체 | 7인 이상 참석 참석 과반 찬성 |
| 2) 위헌법률심판 | 법원 | → 6인 이상 찬성 |
| 3) 정당해산심판 | 정부 | |
| 4) 탄핵심판 | 국회 | |
| 5) 헌법소원심판 | 국민 | |

↳ 위헌심사형
권리구제형 - 공권적의 행사 / 불행사
+ 다른 기본권 구제 수단 모두 거침
→ 입법, 행정 (O), 사법 (X)

* 2, 5 심화

